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(1997.10.1) 및 경상남도로 부터 시달된 표준준칙 근거에 의한 것으로
- 납세자의 권리현장 제정고시와 지방세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한 각종 고지서 및 서류의 송달을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
-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명시와 자동차세의 납기, 징수방법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이 반장을 통한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미 교부로 인한 피해조치 방안은
- 답 :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수령날인 제도 운용
- 문 :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면 과세대상자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는 사유는
- 답 : 전산입력지연 및 담당공무원 연찬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차후 수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.

7. 심사결과

- 1998. 6. 2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